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
		배포일시	2018. 7. 10(화) / 총 2매
담당 부서	항공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권미정 ☎ (044) 201-4181
	항공산업과	담당자	· 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한 ☎ (044) 201-422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아시ানা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국토부 입장

-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에어, 아시아나항공 등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·검토하였음.
 - 검토결과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,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.
-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랜드병식박*이 '04.3.~'10.3 기간 등기임원(사외이사)으로 재직하여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,
 - * 등기이사 사임 이후 '11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짐
 - '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고,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, 특히 '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되어
 -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임.
- 에어인천의 경우 '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, '14년 동 임원이 해임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,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.

- 진에어의 경우 '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, '10~'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졌고,
 - '16.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 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음.
 - * '15.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, 신고한 항공사는 없었음
- 따라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며,
 -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임.
- 한편,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환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